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
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
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
주택의 인수가격 산정 시 인수자가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인수자가
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
하는 한편,

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가
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교부 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정보종합체계
에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입력하도록 하고, 정비사업전문
관리업정보종합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이

관련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: 주택정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(우편번호 30103)

- 전화번호: 044)201-3384, 3390 FAX : 044)201-5532